

특허법 통일화에 대한 세계동향

1. 의의

일반적으로 특허법은 속지주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나라의 특허법에 따라 절차(형식적인 면과 실체적인 면) 등이 결정되어진다. 세계화되고 있는 오늘날, 발명은 유일한 것이라면서 각 나라마다의 특허법에 구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 나라마다 국력의 차이도 있고 제도의 차이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특허법이 통일화된다면 시간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

즉 특허출원 절차와 특허요건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고, 특허취득을 위한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고 동일 발명에 대한 각국의 특허성 판단을 일치하자는 것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특허법이 국제적으로 통일되면 발명자들은 해외에서도 국내에서와 같은 요건과 절차에 따라 특허를 취득하고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국가간 특허출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논의 경과

- (1) '86년 이후 90년까지 8차에 걸친 회의 개최를 통하여 조약 기본안이 마련되었으나, 클린턴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선발 명주의 고수입장으로 회귀함에 따라 조약 타결에 실패

- (2) '95년 이후 WIPO의 주도로 통일화에 장애가 되었던 실체적 사항을 제외하고 절차적 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한 결과, 2000년 6월 특허제도의 절차적 통일화를 위한 특허법조약 (Patent Law Treaty, PLT)이 타결됨

- (3) 2000, 11월 이후 실체적 사항에 대하여 통일화 논의 재개 하였고, WIPO가 작성한 특허실체법조약안(Draft 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SPLT)을 기초로 3차례 국제 전문가회의 개최

3. 특허법 조약(PLT)

각국 특허 절차법의 통일화 및 단순화를 통하여, 출원인에게 일관되며 간소한 특허 절차를 제공함에 있다.

- 출원일 설정 요건의 완화
- 출원서식의 국제적 표준화 및 기재요건 완화
- 체약국은 100% 전자출원 선택가능 (2005. 6. 2이후)
- 실수에 의한 권리의 상실 방지 등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주관으로 '85년부터 진행되어온 특허법 통일화 논의는 2000년 6월 각국의 특허절차를 통일시킨 특허법 조약(Patent Law Treaty, PLT)의 타결로 첫 번째 결실을 맺은 바 있으며, 현재 어떠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특허요건)을 통일하기 위한 특허실체법조약(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SPLT)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4. 특허실체법 조약(SPLT)

특허출원에 있어서의 절차에 대한 것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통일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 선출원주의
- 명세서의 내용, 보정 및 정정
- 선행기술(비서면 정보 포함) 및 신규성 의제
- 특허요건(특허대상,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 청구범위 및 보호범위 등

그 동안 통일화 논의의 최대 장애요소였던 선발명주의를 미국이 조만간 포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특허실체법 통일화 논의가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특허법상설 위원회에서 선발명주의가 특허실체법 통일화를 지체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국의 발명가단체에 대하여 선발명주의 포기를 위한 설득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수차 밝힌 바 있다.

5. 향후계획

특허청은 2004년까지 특허법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2005년경 특허절차법조약과 특허실체법조약에 동시 가입할 계획이며, 이는 잦은 법개정 및 전산시스템수정에 따르는 인력 및 예산의 부담을 줄이고 출원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한 특허청은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최근 특허청과 산업계, 변리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법통일화기획단을 발족시킨 바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제협력, 특허법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및 대외홍보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끝.